

신용평가 약정서(제3자 요청) 금융회사용

의뢰인(이하 “갑”)은 평가대상회사(이하 “병”)에 대한 신용평가를 평가인(이하 “을”)에게 의뢰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 “을”은 후면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평가 대상회사>

- 상 호 :
- 주 소 :
- 대표자 :

※평가대상회사가 복수인 경우는 평가대상회사 목록을 별도로 제출함.

<장기신용등급 평가>

- 평가종류 : 기업신용평가 () 채권평가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Loan Rating ()
- 채권의 명칭 : 제 _____ 회 _____ 채권
- 발행금액(예정) : _____ 원
- 사후평가 여부 : 실시 () 미실시 ()
- 본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 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 사후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 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특약 : _____

※사후평가수수료는 사후평가결과 통지 직후 상기한 금액을 청구함.

<단기신용등급 평가>

- 평가종류 : 기업어음증권 평가 () 전자단기사채 평가 ()
- 발행한도 : 금 _____ 원
- 사후평가 여부 : 실시 () 미실시 ()
- 본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 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 사후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 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특약 : _____

※사후평가수수료는 사후평가결과 통지 직후 상기한 금액을 청구함.

※제 3자가 다수의 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제3자 요청 신용평가 수수료는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등에 따라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음.

년 월 일

의뢰인(갑)

-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

평가인(을)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17(여의도동)
- 상 호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 대표자 : 안 영 복





신용평가 약정사항 (제3자 요청 신용평가)

금융회사용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약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8-19조의 13(제3자요청에 의한 평가)에 의거하여 의뢰인(이하 "갑")이 NICE신용평가(주)(이하 "을")에 평가대상(이하 "병")의 장기신용등급이나, 단기신용등급 등을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평가함에 있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약정에서의 신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 채무증권(단, Credit Linked Note, Covered Bond 등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이 적용되는 채무증권은 제외.)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의 정도 또는 평가대상의 전반적인 적기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호로 표시한 의견을 말한다.

제2조 (신용평가의 구분) ① "본평가"라 함은 본 약정서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한다.

② "사후평가"라 함은 본평가 이후 도래하는 결산일(또는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한다.

제3조 (신용평가의 범위) ① 신용평가는 본 약정에 따라 진행되는 본평가만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에 평가 시점의 일회성 분석의견으로서 사후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평가 실시 후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기한이 없는 경우 회사채는 본평가일 이후 만기일 이내에 연 1회, 기업신용평가는 본평가일 이후 1년 경과시점 이내에 1회, 단기 신용등급평가의 경우 본평가 재무제표기준일의 익년도 결산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 때 회사채의 만기는 투자자 모집 및 발행시점에 결정된 만기를 말한다. 이 때 회사채의 만기는 투자자 모집 및 발행시점에 결정된 만기를 말한다.

제4조 (평가기간) "을"이 신용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 약정 체결 후 신용평가서의 최초 발송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단, 급격한 환경 변동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와 출장 또는 평가결과의 재평가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이 약정의 체결 또는 신용평가서의 수령과 동시에 앞면에서 정하는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약정에 기재된 사후평가수수료는 사후평가 1회 실시에 따른 수수료이다. ③ "을"은 신용평가를 위한 출장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 제 비용을 평가수수료와는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제출과 관련된 업무협조) ① 본 약정에 의한 신용평가는 "병"으로부터 신용평가에 대한 동나 자료제공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자본시장에 공시된 "병"과 관련된 자료와 산업관련 공시자료, 국내의 분석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이 약정체결 후 "갑"이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병"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본평가 자료를 "갑"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1. 최근 3개년 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각1부
2. 최근 분기보고서 및 분기검토보고서 각1부
3. 최근 월 금융거래현황(여수신현황,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내역) 1부
4. 기타 신용평가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③ "갑"이 "을"에게 신용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고, 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재평가) ① "을"은 신용평가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재평가를 요청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신용평가결과에 대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일의 익일 15시까지 재평가 요청사유 및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제6조 ③항에 따른 대표이사확인서(기체출시는 면제)를 첨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용평가 결과 통지 이후 "을"이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을"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갑"은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서의 사용제한) ① 본 약정에 의한 신용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35조의1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서 규정하는 규제등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② "갑"은 "을"이 발행한 신용평가서를 해당 신용평가서에 명시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갑"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및 보고서 등의 공개) "을"은 "병"에 대한 신용분석의견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갑"에게 제공하고, "을"은 본 약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평가의 거절 및 손해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은 본 약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갑"이 본 약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을"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 ② "병"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을"은 본 약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동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정한 평가거절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본 약정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갑"이 제출한 "병"의 비밀사항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한국거래소 규정을 포함)에 의거 감독기관,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② "갑"은 등급평가 과정에서 지극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약정의 해지 및 평가수수료의 반환) ①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약정 제10조 제①항의 사유로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출자료의 반환청구 금지) 이 약정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갑"은 신용평가를 위해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을"의 면책) ① "을"이 행하는 신용평가의 목적은 "병"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의 정도 또는 평가대상의 전반적인 적기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특정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인 채무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 유예 또는 지체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서 정한 평가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갑"으로부터 수령한 평가수수료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본 약정에 의한 신용평가는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용평가에 따라 불충분한 신용평가 정보를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약정의 보완)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고 관례가 없을 경우에는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정보의 이용) "을"은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을"은 제공된 정보를 종합 또는 변환하여 "병"과 연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종합되거나 변환된 정보를 발행, 배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보장의 부인) 본 약정서와 채무증권 발행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신용등급 및 기타 의견 포함)는 "있는 그대로"의 조건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특히, "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정보 또는 의견의 정확성, 적시성, 충분성, 시정성 또는 특정 목적 부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장도 하지 않는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정서와 그 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고 해석되어야 하며, 본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





NICE신용평가의 신용평가 수수료 적용기준(제3자 요청) 금융회사용

<장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만 원 미만 절사>

본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수수료
	1천억 원 이하	770만원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	910만원
	5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1,120만원
	1조 원 초과 2조 원 이하	1,540만원
	2조 원 초과	2,310만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장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및 채권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Loan Rating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하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단기신용등급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만 원 미만 절사>

기업어음증권 평가수수료	본평가(기본)수수료 + 사후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산식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0.7/32,000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본수수료 최저한도	210만원	595만원
기본수수료 최고한도	420만원	2,100만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단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수수료를 적용함.

<장기신용등급 평가 및 단기신용등급 평가 공통 적용>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채권,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과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중복평가지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함.
- 해외기업에 대한 본평가 기본수수료는 5,000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그룹분석 추가수수료는 분석필요 계열사당 1,500만원임.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 최고한도 및 연간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평가수수료 산정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해 적용함.